

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7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,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기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통합·운영하였으나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법적(시설·운영)기준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여,
- 나. 피해장애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,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 관리 및 운영
- 나. 위탁시설 개요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(비공개 시설)
 - 시설규모 : 316㎡
 - 시설용도 :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
 - 입소자 정원 : 8명
 - 종사자 현황 : 9명(주방 보조인력 1명 포함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
-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
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필요성

-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지속 필요

라.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(5년)

마. 위탁사무 내용

-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-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-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-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

- 소요예산 : 713백만원(2022년)
- 산출내역 : 인건비 510백만원, 운영비 42백만원, 사업비 50백만원,
시설비 100백만원, 자산취득비 11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장애인복지법]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]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류미숙 (☎2133-7362)